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4.28.(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4월 18일

○ 회부일자 : 2003년 4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4. 28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됨에 따라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신설되는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대통령의 휴양시설 및 제2집무공간으로 활용되어온 청남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소유·관리권을 우리 도로 이관하기로 합의하고 일반에게 개방함에 따라,

주요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 보전,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청남대 관리사업소에는 2개 과(총무과, 시설과)가 신설되는 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할 필요성과

청남대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재원조달, 관람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관광 명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골자

○ 일부 자구조정

- “주요시설” ⇒ “시설”(제49조, 제51조)
-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 “관광홍보·안내”(제51조 제3호)

○ 부칙조항(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제2조)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
 ⇒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신설되는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함.

의안전문 :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49조 내지 제51조)를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로,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하고, 동장에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제49조 내지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50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주요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제1절 내지 제5절 (생략)	제1절 내지 제5절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u><신설></u>	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u><신설></u>	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u><신설></u>	제50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u><신설></u>	제51조(소관사무)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주요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49조 내지 제51조 (생략)	제52조 내지 제54조 (현행과 같음)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2조 내지 제54조 (생략)	제55조 내지 제57조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4. 28.

제안자 : ○○○ 위원외

1. 수정이유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 일부 자구조정

- “주요시설” ⇒ “시설”(제49조, 제51조)
-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 “관광홍보·안내”
(제51조 제3호)

○ 부칙조항(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제2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

- ⇒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 및 제51조 중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
안 제51조 제3호 중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을
“관광홍보·안내”로 한다.

안 부칙 시행일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조 문 대 비 표

□ 조례명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장 사 업 소</p> <p>제1절 내지 제5절 (생략)</p> <p>제6절 <u>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u></p>	<p>제4장 사 업 소</p> <p>제1절 내지 제5절 (현행과 같음)</p> <p>제6절 <u>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u></p>
<p>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u>주요시설</u>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p> <p>제50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1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u>주요시설</u>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p> <p>(개정안과 같음)</p> <p>제51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2조 내지 제54조 (현행과 같음)</p> <p>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5조 내지 제57조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신설)</p>	<p>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2조 내지 제54조 (개정안과 같음)</p> <p>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5조 내지 제57조 (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u> <u>의위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u> <u>“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u> <u>“충산위생연구소장,</u> <u>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u> <u>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u> <u>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u> <u>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p> <table border="1" data-bbox="539 1115 930 1257"> <thead> <tr> <th>입력 번호</th> <th>사 무 명</th> <th>위 임 대상기관</th> <th>근기범위</th> </tr> </thead> <tbody> <tr> <td>8</td> <td>0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연보급</td> <td>청남대관리 사업소장</td> <td>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td> </tr> </tbody> </table>	입력 번호	사 무 명	위 임 대상기관	근기범위	8	0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연보급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입력 번호	사 무 명	위 임 대상기관	근기범위						
8	0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연보급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